

도로 노선의 [] 지정
[] 변경 고시
[] 폐지

○○○○○고시 제 호

도로법 []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
[] 제21조제3항

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[] 지정
[]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[] 폐지

년 월 일

도로관리청

직인

구 분		[] 지정 [] 기존	[] 폐지 [] 변경
도로의 종류			
노선번호			
노선명			
기점			
종점			
주요 통과지			
총연장(킬로미터)			
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	구간		
	연장 (킬로미터)		

작성방법

-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"-중 지정국도"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.(예시: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)
- 기점·종점은 행정구역을 읍·면·동 및 지번까지 적고,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·면·동까지 적습니다.